

『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』 등 입법예고

관세청에서 법령 개정 사항 반영, 용어 정비 및 명확화, 공인기준 개정과 AEO 혜택 규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『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』의 개정 예정 사항을 공고하였으며, 심사체계 개편,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『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』의 개정 예정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. 개정 내용의 경우 2024년 3월 시행 예정이며, 고시 및 훈령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1.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

1. 법령 개정 사항 반영

(1) 공인 취소 사유를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

현행	개정안
제25조의 2(공인의 취소)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.	제25조의 2(공인의 취소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(신 설)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

(2) 보세사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

(3) 관세사 부분 공인 취소사유(사무소 설치개수 위반) 일부 제외

-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공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. 다만,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및 제32조(제29조 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)따라 적용되는 통고처분은 제외 한다.

2. 용어 정비 및 명확화

(1) 「관세법」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상 용어와 통일화(자율 평가 등)

- ‘자체 평가서’를 ‘자율 평가서’로 변경
- ‘통관절차 등의 혜택’을 ‘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’으로 변경

(2) 통관적법성 ‘검증’ 대신 ‘심사’로 표현 통일화(통관적법성 검증 → 통관적법성 심사)

(3) ‘종합심사’를 ‘갱신심사’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(기업심사)와 혼돈 여지 제거

* 종합심사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재심사(통관적법성 검증 포함)

구분	AEO 갱신심사	관세조사(기업심사)
근거법령	관세법 §255의2② - “납세자 신칭(희망)”	관세법 §110의3① - 대상 선정(통지)
제도성격	공인 유지 등을 위한 업체 자발적 요청	영업의 자유 등 납세의무자 권의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
오류조치	관 정보 제공 → 민 자율 이행 = 컨설팅	관 강제조사 → 민 강제 이행
심사결과	우수기업 공인, 혜택 제공	혜택 없음(문제기업 징벌적 성격)

(4)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‘지원 업무’로 명확화

- 위탁 업무 대상을 ‘서류심사 지원업무’ 및 ‘예비심사 지원업무’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

* (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)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구분	현재	개정(안)
예비심사 (제7조의2 제2항 등)	예비심사를 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심사주체) 관세청(관세평가분류원장) • (수탁기관 업무) 심사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업무* 수행 * 수탁기관에서 1차 검토 보고서 작성 후 관세청에서 심사 결과(가부 등) 확정
서류심사 (제8조 제6항 등)	서류심사를 위탁	

3. 공인기준 개정 [별표 1]

- 중소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*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**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

*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(제출 서류 대폭 축소 : 약 500종 → 약 350종)

**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,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

4. AEO 혜택 규정 개선 [별표 2]

- 상대국(MRA)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 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수입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

구분	현재	개정(안)												
		〈검사 축소율〉												
		상대국* 수출자 AEO 여부	국내 수입자의 AEO 등급											
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(무작위선별은 제외대상 아님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3">〈검사 축소율〉</th> </tr> <tr> <th>A등급</th> <th>AA등급</th> <th>AAA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%</td> <td>70%</td> <td>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상대국 수출자가 MRA 체결국 AEO기업인 경우 A등급 적용</p>	〈검사 축소율〉			A등급	AA등급	AAA등급	50%	70%	100%		A등급	AA등급	AAA등급
		〈검사 축소율〉												
A등급	AA등급	AAA등급												
50%	70%	100%												
		X	50%	70%	100%									
		O	70%	80%	100%									

* MRA 체결 상대국에 한함

-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* 및 근거 규정 변경** 등 혜택 규정 현행화

* (수출입부문)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

* (수출)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(수입세금 납세증빙) 자동 발급

** 물품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요건 비적용 등(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하 고시 제71조 → 62조) 등

II.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

1. 갱신심사 주체 확대

-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에 적극 대응

* 평균 심사 소요기간 : ('18) 97 → ('19) 104 → ('20) 105 → ('21) 129 → ('22) 131

구분	현재	개정(안)
갱신심사 주체 (제5조 사무분장 등)	· 관세평가분류원장	·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*도 수행 가능 *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

2. 통관적법성 심사 중간·결과보고 진행절차 및 본부세관장 심사 결과 통지 근거 마련 등

- 통관적법성 심사의 주요쟁점* 등에 대한 중간·결과보고(본청) 절차 및 본부세관장의 심사 결과 직접 통지(대상 업체) 근거** 마련

* 타부처 업무협의 필요·타기관 통보, 기타 관세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

** 현재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본부세관장이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를 업체에 직접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

구분	현재	개정(안)
갱신심사 절차 (제33조 제2항)	·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세관장이 업체에 직접 통보 가능	·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 통지, 심사 중단 등에 대한 통지를 세관장이 직접 업체에 통보 가능
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(제34조)	· 관세평가분류원장을 통해 본청에 결과 보고 · 본청 중간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 없음	· 세관장이 직접 본청에 보고 뒤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 · 조사의뢰 등 타부처 업무협의 필요사항, 타기관 통보 관련 사항, 다른 심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본청 중간보고

3.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

- 업체 신청 철회에 따른 공인심사 중단 규정 마련

구분	현재	개정(안)
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(제11조의 2)	-	·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 반환

4. 갱신심사에서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심사팀이 업체의 명백한 탈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구분	현재	개정(안)
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(제34조 제7항)	-	· 명백한 탈세 정황 발견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

5.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'지원 업무'로 명확화

- 위탁 업무 대상을 '서류심사 지원업무' 및 '예비심사 지원업무'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

* (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)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III. 시행일

- 시행일자: '24.3.

IV. 의견제출

1. 제출기한

- 2024년 3월 7일

2. 담당자 및 제출방법

- 제출처: 관세청 심사정책과

- 담당자: 김덕기 사무관(042-481-7865), 장윤희 주무관(042-481-7866)

- 제출방법: 온나라 문서·메모보고, 내부메일, E-Mail(aeo1@korea.kr)

I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[붙임1] [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]_입안계획서

[붙임2] [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]_신규대비표

[붙임3] [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]_개정 전문

[붙임4] [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]_입안계획서

[붙임5] [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]_신규대비표

[붙임6] [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]_개정 전문

I Contact



안성호 관세사 / Senior Manager

T 02-6011-3048

E shahn@esein.co.kr



강은지 Senior

T 02-6011-3056

E ejkang@esein.co.kr